

의안검토보고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8. 1. 11. 광영교 의원 외 6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3. 의안요지 : 붙임참조
4. 검토의견 : 붙임참조

위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월 30일

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

전문위원 권태환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8. 1. 11 광영교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. 1. 14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그동안 회의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과 관련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 기한을 명시함(안 제20조제3항)
- 의안의 상정 시기를 삭제함(안 제57조의2)
- 관련법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

3. 검토의견

-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2에 의하면 '의안의 상정은 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'라고 규정하고 있으나
-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와 임시회를 대부분 홀수 월에만 집회함으로써 회기간격이 길어 매 회기마다 많은 의안이 제출되어 안건의 충분한 검토 등 의안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음.

- 따라서, 본 개정규칙안은 안전의 충분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현행 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의안을 집회일 14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,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 제20조제3항의 조문 개정에 따라 제57조의2를 삭제하고, 규칙의 내용중 관련법 조항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